##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00

발의연월일: 2021. 7. 29.

발 의 자:김상희·김민철·김승남

류호정 • 문정복 • 박성준

서영교 · 오영환 · 용혜인

유정주 • 윤건영 • 이원욱

정필모 • 조오섭 • 최종유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그 파급력과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 시하는 행위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	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	1
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	
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	
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	
는 것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
	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
	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